

울산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1가단1285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1751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1가단128554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허기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형철, 강부환

피 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23. 11. 14.

판결선고 2023. 12. 5.

주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0. 3.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2,640,7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880,25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정보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19. 1. 16. F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9. 3. 5.경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나. F 주식회사는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89658호로 ‘24,727,461원과 그 중 19,802,900원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25.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20. 7. 11. 확정되었다.

다. F 주식회사는 2020. 11. 23. E에 대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20. 3. 27. 사망하여 자녀들인 E와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마. 피고들은 2020. 3. 27.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들은 2020. 8.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들은 2020. 7. 21.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95,0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8. 3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도 울산 동구 I에 있는 J아파트 K호, 울주군 L 대 836.7㎡와 M 대 846.1㎡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들은 다수의 근저당권 또는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실상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사실상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한편, E는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N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 O카드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아.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원리금 합계 32,640,761원이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E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는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들과 E 사이에 2020. 3.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E의 상속분인 1/4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E가 2018. 10. 9.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상속분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일 뿐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인 2020. 8. 37.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 피고들로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9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가와 같다고 추인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32,640,761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라. 소결

피고들과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32,640,7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각 10,880,253원(=32,640,761원/3)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별지